

문서번호 : 인개택업 12 호
공고일자 : 2017년 10월 31일
공고기한 : 2017년 10월 31일 ~ 2017년 11월 09일

게시판 : 각 충전소

2017년도 최종 일제점검 안내문

1) 일 정

날 짜	요 일	대 상 차 량
11월 9일(다조)	목요일	2017년도 일제점검 미 이수 차량

2) 장 소

-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32-18
(인천체육고등학교 맞은편 도로)

3) 시 간 : 2017년 11월 9일(목) 10:00 ~ 17:00시

※ 2017년도 최종 일제점검 후 이수자 명단이 인천시청으로 보고되며, 금년도 추가 일제점검은 더 이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 이수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제점검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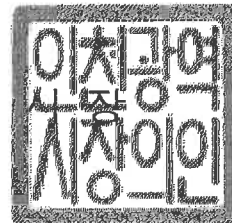


【 행정처분 관련 내용 】

구분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처분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2.개별기준)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제21호	운행정지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제21호	과징금 (4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과징금 처분) : 사업정지처분 같음하여 과징금 부과 징수
끝.

인천광역시



주무관 이나영 택시관리담당 이규학 택시화물과장 최민수
 진설 2017. 10. 13.

협조자

시행 택시화불과-12725 (2017. 10. 13.) 접수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농 302호 택시화물과 / <http://www.incheon.go.kr>
 (구월동)

전화번호 032-440-3827 팩스번호 032-440-8669 / nayou79@korea.kr / 대국민 공개

"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